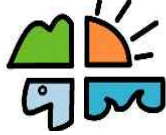


속 초 시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선	기 관 의 장
람	

공  보

제1192호 2019년 1월 25일(금)

조 례

-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2

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2019년 월 일

속 초 시 장



속초시 조례 제2659호

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

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, 제3조 제1항의 월정수당은 2019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.

[별표]

월정수당 지급기준(제3조 제1항 관련)

연 도	지 급 액
2019년	연26,300천원
2020년	2019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을 범위만큼 인상
2021년	2020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을 범위만큼 인상
2022년	2021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을 범위만큼 인상

◇ 개정 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33조,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속초시의
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19~2022년까지의 속초시의회 의원 의
정비 지급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